

第1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 · 6 · 통권 제69호

- I. 개회식3
- 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15
- IV.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1
- V. 부 록
 - 1. 의사일정25
 -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27
 -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31
 - 4. 특수학교 설립계획안61
 -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69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1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5
8.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81
9. 심사보고서(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1

V. 별 책 부 록

1. 19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 '99.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월요일) 11시 02분

開會式順(第11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2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5분 폐식)

지금부터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월요일) 11시 05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특수학교설립계획안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박영하)
2.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특수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지난달 인천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교육위원님들이 가셔서 직접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을 대표해서 출전하여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우리 어린 선수들, 그리고 평소 훈련에 애쓰신 지도선생님들과 선수단 여러분께도, 또 그간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우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남북의 교류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도 새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 교육현장에 앞으로 희망이 비춰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이 정상회담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반드시 큰 결실이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금 바로 잡아드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외에 참 국가적인 일로 출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그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보통 정기회를 할 때는 일일이 우리가 출석 의결을 안해도 의결한 것으로 보고 출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교육감이 외국에 이렇게 애쓰러 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했으면 종전에, 종전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임시회를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개최했을 때에는 출석요구를 의결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못 오신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를 제가 요구한 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상 앞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회의가 있으면 못 오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만 주셔도 저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십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이 국외출장을 떠난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는 출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11시 10분)

●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6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2000-6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1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각각 심의한 후에 6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결산안을 먼저 심의·의결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특수학교설립계획안과 함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소위원회 활동으로 6월 15일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
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특수학교설립계획안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13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특수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5개 안건을 동일국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각각의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규칙 등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2000년 2월 28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법제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폐고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입니다.

현행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이자를 5%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농공 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적용입니다.

도유재산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재산의 대부료를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합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또는 사용료가 1000분의 10인 경우에는 특별적용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여 재산의 다른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참 조 총괄특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목적은 음성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체, 지적부자유 등 장애 아동에 대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특수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설립계획의 주요내용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에 있는 음성 맹동면 통동리 235번지 구 맹동초등학교 봉동분교장 7,150㎡의 부지에 1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유치부 1학급 7명,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114회-제1차 본회의]

학급당 학생수 10명씩 총 7학급 6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23실을 특수교육에 적합하도록 신축하여 200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천주교구 천주교의 유지재단의 재산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참 조 특수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3일부터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2주간 결산 감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결산은 9,07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7,995억 8,400만원이며, 1,077억 2,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2억 1,2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1,100만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073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073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28.1%인 2,546억 6,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1.9%인 6,526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087억 6,700만원이며, 88%인 7,99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43억 3,600만원, 사고이월 188억 7,600만원, 도합 43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9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5,172억 4,500만원, 물건비 946억 9,700만원, 경상이전비 529억 1,9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46억 4,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7,600만원, 총 7,995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로 등 4종 4,700만원, 폐교 재산 매각 분납금 1억 9,200만원, 원어민 교사 임대차 전세금 2억 4,2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32억 1,100만원으로 총 236억 9,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749억 7,8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충당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운영비로 300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 9월 개교한 경덕초등학교 등 4개교와 2000년 9월 개교하는 중암초등학교 등 2개교 시설에 185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부족교실 증축에 75억 4,000만원, 일반시설 확충에 71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49억 7,000만원, 기관 시설사업에 102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46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 급식시설비로 104억 9,100만원, 운영비로 65억 8,3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20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2억 4,200만원, 시설비 10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19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 별책1
'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별책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별책3

다음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 1,228만 5,83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

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학년 김선우 학생 외 4명이 제초 작업한 풀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놓은 이동식 축구골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생을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합의배상금 2억 7,283만 5,740원과 '99년 1월 7일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로 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돌풍에 날려 때마침 지나가던 민간인 김진성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배상금 3,945만 9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6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한 국 소관으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5분)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역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 중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결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앞으로 있을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송진하, 이기수 두분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6월 15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겠으며,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청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모레 6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 특수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6

※ 별 책 부 록

- ▶ 19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1
- ▶ '99.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별책2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별책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4일(수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충원위원 외 6인 발의)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엣그저께부터 2일간 소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마 우리 59년만에 우리 국민들 7천만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나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체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기 먼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의·의결한 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충원위원님께서 전체 위원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한 교육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발의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이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이 되어 종전의 “감사는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에서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감사는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며”라는 감사실시 시기에 대한 제한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에,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시·도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도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와 운영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가장 적절한 시기에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최대한의 감사성과를 거두고, 나아가서 교육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에서 “정기회 기간중”을 삭제하고 “감사는 매년 5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함으로써 행정감사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감사시기 등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행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 개정안 내용 및 신규 조문 대조표, 관련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료 위원께서 찬성하시어 전체 교육위원 명으로 공동 발의된 만큼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믿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7

(끝에 실음)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충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이충원 위원님이 대표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2차에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면, '98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087억 6,70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9,073억 1,000만원과 7,995억 8,400만원으로 1,077억 2,600만원의 세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제114회-제2차 본회의]

출, 이월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9,073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73억 1,000만원이 수납되고 2,200만원이 불납결손, 4,7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6,526억 4,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1.9%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2,546억 6,500만원으로 2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정도이며, 불용액은 659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입니다.

이월액은 교육행정부,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가 78.1%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7.2%로 '97년도 5.6%에 비해 다소 높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부 1.3%, 사학지원비 4.4%, 제지출경비 1.5%, 예비비가 16.8% 증가한 반면, 급여관리 15.9%, 교육사업비 0.3%, 학교비 2.1%, 시설비가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억 3,600만원, 사고이월 41건에 188억 7,600만원, 총 71건에 43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22억 4,9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 안전사고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 3억 1,200만원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99년도중 60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159억 2,600만원이 소멸되어 '99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 9,200만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74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9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60억 6,900만원이 증가된 1조 6,718억 8,300만원이며, 물품의 '99년도 말 현재액은 11,468점에 615억 2,500만원으로 '98년도 말 현재액 9,839점 499억 1,400만원에 비해 '99년도 중에 2,309점 146억 3,300만원의 증가와 680점 30억 2,300만원

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99회 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73억 1,000만원이고, 총 지출이 7,995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1,077억 2,600만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 전에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1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르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출예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앞에서 지적한 개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검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질의 답변은 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에 관계관계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4회-제2차 본회의]

의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19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결산안은 바로 교육감에게 제출되어 차기 도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6월 16일 오전 11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7
-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별첨8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6일(금요일) 11시 32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특수학교설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특수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32분 개의) 다.

● 의장대리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의안관련하여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음성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간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관련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

오늘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과 교육감 제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현장을 다녀오신 특수학교 설립계획안과 함께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각각 안전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2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2건의 조례안 모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례로 규정하였던 사항이 동 시행령에 포함되었고, 그 외 기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를 하향조정, 폐교재산 등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조정과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심사보고서(충청북도교육·학예법 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9

(끝에 실음)

● 의장대리 이기수

이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수학교설립계획안

(11시 40분)

● 의장대리 이기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수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수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등 소위 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으로 위원님

[제114회-제3차 본회의]

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산회 및 제114회 충

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

다.

(11시 41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총무과장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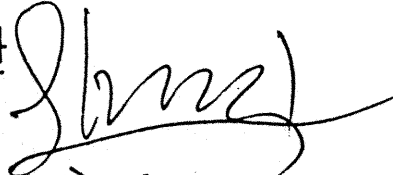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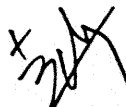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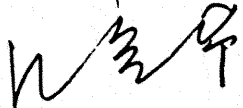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심사보고서(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9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7.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송 진 하	
위 원	이 기 수	
의사국장	신 춘 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 6. 12. ~6. 16.(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月12日(月)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協議會 <input type="checkbox"/>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 1. 第1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6. 12. ~6. 16.(5日間) 2. 忠清北道教育·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提案說明) 3.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4. 特殊學校設立計劃案(提案說明) 5. 1999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提案說明) 6. 1999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提案說明) 7. 條例審查小委員會 構成의 件 8. 豫算·決算小委員會 構成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條例審查小委員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6月13日(火)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豫算·決算小委員會	本會議 休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月14日(水) (11:00)	<p>[第2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行政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9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3. 1999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p>[第2次 本會議 散會]</p> <p><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p> <p>- 條例審查小委員會</p>	
6月15日(木)	<p><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p> <p>- 條例審查小委員會</p> <p><input type="checkbox"/> 議案關聯 現場訪問</p>	本會議 休會
6月16日(金) (11:30)	<p>[第3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忠清北道教育·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2.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特殊學校設立計劃案 <p>[第3次 本會議 散會]</p> <p>※ 閉 會</p>	

(별첨2)

의안번호	제 114-1호
의결 년 월 일	2000. 6. 16. (제 114 회)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4-1
----------	-------

제출년월일: 2000. 5. 29.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폐지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 2000.2.28)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폐지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조 례 안 : 별 첨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1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조례 제207호, 1964.11.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730호, 2000.2.28.)

제16조(법제심의위원회) ①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첨3)

의안번호	제 114-2호
의결 년월일	2000. 6. 16. (제 11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 2
----------	---------

제출년월일 : 2000. 5 . 2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안 제7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
-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일부 완화 (안 제14조)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고 사용허가표지 부착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안 제22조)
 - 현행 도유(교육)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
 -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이자를 5퍼센트로 하향조정 함.
 -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농공단지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 (안 제23조)
 - 도유(교육)재산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

-기존에 벤처기업전용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특례로 적용하던 도유(교육)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1000분의 10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까지 확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정함.

○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안 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유(교육)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의 대부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6267호)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618호)
- 교육부공유재산관리조례 참고 시안

□ 조례안 : 별 첨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칙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6호중 “지역의”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1호, 제16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제4호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를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분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을 “목축·광업·채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중 “1000분의 25”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7항중 “영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 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로 하며, 동조 제9항중 “기술연구집단지단지 및”을 삭제하고 “기술연구 집단지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하되, 월할로 계산”을 삭제하고, 동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괄호안의 “사용료, 변상금을”을 “사용료를”로 하며,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3 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하고, “이상으로 제조업인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마목중 “수출지향형”을 삭제한다.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23조의3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중 “수출지향형”을 삭제한다.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제23조의3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중 “수출지향형”을 삭제한다.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로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begin{array}{l}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 \\
 \text{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
 \text{(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
 \text{총면적)} \\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
 \text{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
 \text{해당층의 총면적)}
 \end{array}$$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유예할”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명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비치”를 “대부정리부 비치”로 하고, 제1항중 “공유재산”을 삭제하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45조중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5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u>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서, 위임장 및 수령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⑥ (생략)</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u></p> <p>⑤ (생략)</p> <p><신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u></p> <p>④~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 (삭제)</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생략) 1.~4. (생략)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8. (생략)</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 (현행과 같음)</p>
<p>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에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 (삭제)</p>
<p>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5.(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5.(현행과 같음) ②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생략)</p> <p>1.~5. (생략)</p> <p>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p> <p>1.~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략)</p> <p>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생략)</p> <p>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③ (생략)</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4. (생략)</p>	<p>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p> <p>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 -----<u>(삭제)</u>-----</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p> <p>2.~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 (생략)</p> <p>1.~3. (생략)</p> <p>4.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① (생략)</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1.~2. (생략)</p> <p>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2. (생략)</p> <p>⑤ (생략)</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④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 -----</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목축·광업·채석----- ----- -----</p> <p>1.~2.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 ----- -----</p> <p>1.~2.(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단서신설></p> <p>⑦ 영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이 대부로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3.(생략)</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신 설></p>	<p>⑥-----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삭제)----- ----- ----- 1.~3.(현행과 같음)</p> <p>⑧-----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 -----</p> <p>⑨----- ----- ----- (삭제)----- -----또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삭제)-----</p> <p>⑩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 ----- ----- (사용료를 -----) ----- ----- -----	
증가율	대부료인상율	-----	-----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	-----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	-----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	-----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	-----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	-----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
<p><신설></p> <p><신설></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p>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략)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p> <p>마. ~사. (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 과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삭제)----- ----- -----</p> <p>마. ~사. (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 과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div>

현행	개정안
<p>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p>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p><신 설></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생략)</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등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비치) 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 -----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p> <p>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삭제)----- -----대부정리부----- 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p>

현행	개정안
<p>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신설></p> <p>제5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45조(정의)----- -----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p> <p>제55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7조(준용)-----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p>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 인삼, 연초, 유채,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4.1.7, 95.12.29 법 5091. 96.12.31. 99.2.8)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등) ①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등기·등록 및 대장관리등)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

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 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같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99. 4. 30 삭제>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광업·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등을 따로 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93조(손해보험계약)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 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 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의4(잡종재산의 신탁)

① 법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별첨4)

의안번호	제 114-3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6. 16. (제 114 회)

특수학교 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특수학교 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114-3
----------	-------

제출년월일 : 2000. 5. 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장애아동에 대한 유지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육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쳐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계획

- 학교명 : 꽃동네학교(가칭)
- 설립자 : 학교법인꽃동네현도학원 이사장
-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동리 235번지
- 개교예정일 : 2001. 3. 1.
- 학생수용계획

구분 학년도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01	1	7	1	10	1	10	1	10							4	37
2002	1	7	1	10	1	10	1	10	1	10					5	47
2003	1	7	1	10	1	10	1	10	1	10	1	10			6	57
2004	1	7	1	10	1	10	1	10	1	10	1	10	1	10	7	67

○ 부지확보 계획

- 기 준 : 4,000㎡
- 확보계획 : 7,150㎡

○ 시설확보 계획

구 분	총 계		2000년		2001년		비고
	실수	면적(㎡)	실수	면적(㎡)	실수	면적(㎡)	
보 통 교 실	7	362.88	7	362.88			
관 리 실	5	157.59	5	157.59			
특별교실 및 특수활동실	5	416.16	5	416.16			
보건위생실 및 기타시설	6	759.78	6	759.78			
계	23	1,696.41	23	1,696.41			

- 재원확보 방안 :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재산출연금으로 충당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불임과 같음
- 위치도 및 지적도 : 불임과 같음

근 거 법 령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1)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 ②설립주체 및 교육법 제81조 제6호(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시행령 제55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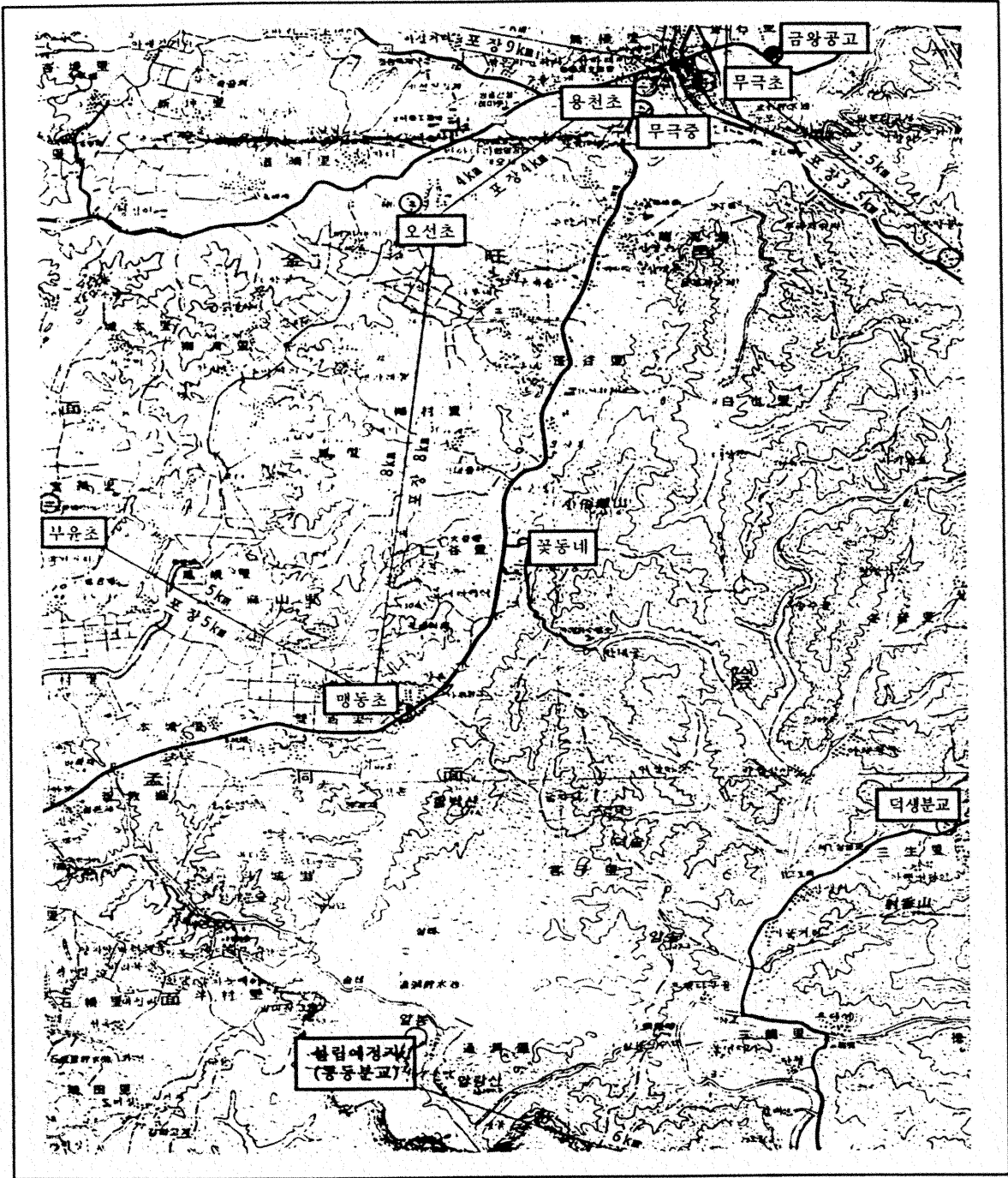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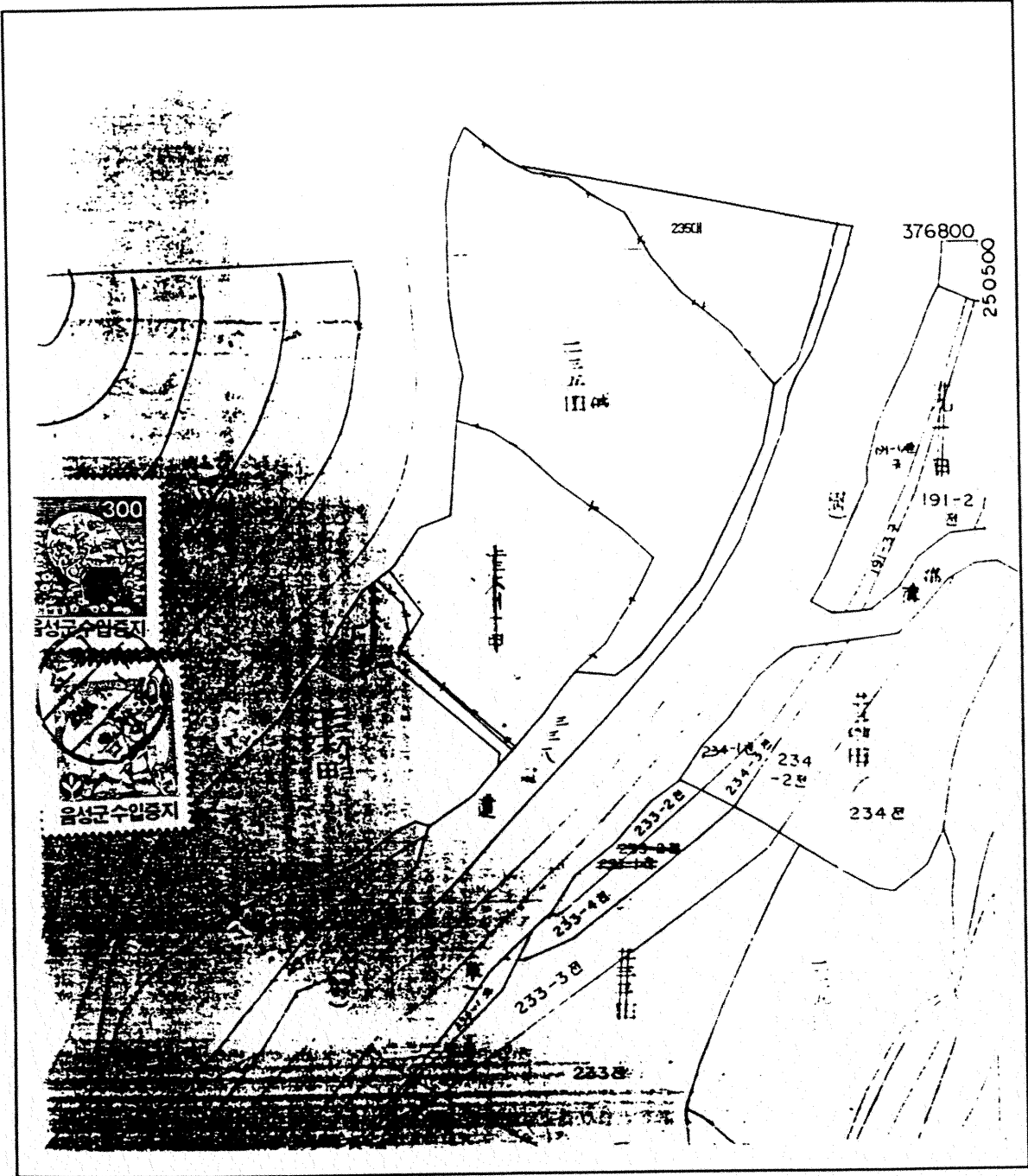
1. 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 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 확보계획

②제1항제1호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 이어야 한다.

꽃동네학교 위치도



꽃동네학교 지적도



(별첨5)

의안번호	제 114 - 4 호
의결년월일	2000. 6. 14. (제 114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14 - 4
----------	---------

제출년월일 : 2000. 5. 2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99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10,167,210원, 세출결산액은 799,583,988,86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3,212,316,6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11,621,71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2,240,000원으로서 총 107,726,178,35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3.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99.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붙임.

나. '9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별첨6)

의안번호	제 114 -5 호
의 결	2000. 6. 14
년 월 일	(제 114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114 - 5
------	---------

제출년월일 : 2000. 5. 2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제안이유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2건
- 지출결정액 : 312,287,000원
- 지출액 : 312,285,830원
- 잔액 : 1,170원
- 지출사항
 - 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272,835,740원
 - ②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39,450,090원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원)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2. 8.	145,460,000	145,460,000	0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1심판결30%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7. 7.	39,451,000	39,450,090	910	제천중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12. 23.	121,385,000	121,385,000	0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2심판결확정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12. 31.	5,991,000	5,990,740	260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차액에 공판담금30%
계		312,287,000	312,285,830	1,170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첨

'99.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원)

과 목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사 용 액	잔 액	비 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본청	교 육	교육행정	기획관리국	기 관	배상금	312,287,000	312,285,830	1,170	
	행정비	기관운영비	운 영	영	운영비				
합 계						312,287,000	312,285,830	1,170	

예비비지출 사유

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 1996. 10. 23.부터 10. 30.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96. 10. 23., 10:30경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학년 김선우의 4명이 제초 작업한 후 풀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놓은 이동식 축구골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생을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임.
- 제1심 1998. 11. 11. 청주지방법원 원금290,913,067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 청구액 635,868,000원의 45.7%)
- 제1심 판결배상액의 50%인 145,460,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
- 제2심 1999. 11. 4. 대전고등법원 원금 270,787,309원 배상 판결 (원고 및 피고의 상고 포기: 2심 판결금액으로 확정)
- 제2심 확정 판결액(270,787,309원) 및 지연이자(37,202,265원)중 중간지급액(145,460,000원)과 원고부담 소송비용(1,144,574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결정액(40,000,000원)을 공제한 121,38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
- 사고학생 김선우의 치료비중 공단부담금 11,981,490원중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공제한 5,990,740원을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에 의거 구상금 청구가 있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

②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 1999. 1. 7., 15:40경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쇠파이프로 제작)가 돌풍에 날려 때마침 지나가던 민간인 김준성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고임.
- 피해자의 처인 김계자의 3명(자녀)이 청주지구 배상심의회에 123,836,270원을 배상 신청하여 동 심의회에서 '99. 5. 20. 신청인에게 39,450,09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결정되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

(별첨7)

의안번호	제 114 - 6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6. 16. (제 114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충원 교육위원 외6인
발의년월일	2000. 6.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4 - 6 호
----------	------------

발의년월일 : 2000. 6. 13

발 의 자 : 이충원 교육위원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1.28. 법률제6002호) 및 동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제16730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매년 10월 20일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교육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3. 개 정 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나.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정기회 기간중”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감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위원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조 (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 제36조, 제37조 …… 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
되,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 ⑤ (생략)

(별첨8)

(제114회 임시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2000. 6.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8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83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83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83
5. 토론 주요내용	84
6. 심사보고 주요내용	84
7. 심사결과	89
8. 소수의견 주요내용	89
9. 기타 필요한 사항	89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6월 12일 제114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2000년 6월 12일)
 - 제2차 소위원회(2000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9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 세출결산액은 799,583,989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43,212,31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11,621천원, 국고보조금잔액은 2,240천원으로써 총 107,726,17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843,305,773	908,767,015	907,310,167	799,583,989	107,726,178

○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8,767,015천원('98.이월사업비 65,461,242천원 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799,583,9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07,726,1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3,212,316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64,513,862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64,513,862천원

- 명사이월사업비 : 24,335,709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8,876,607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08,767,015	907,379,402	907,310,167	22,052	47,183	99.8%	99.9%

'99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907,379,40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7,310,167천원이 수납되고 22,052천원의 불납결손과 47,183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52,645,483천원(71.9%)

- 자체수입 254,664,684천원(28.1%)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10.2% 높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843,305,773	65,461,242	908,767,015	799,583,989	43,212,316	65,970,710	88.0%	7.2%

'99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83,9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3,212,31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65,970,71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인데,

○지출액 799,583,989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264,947천원(0.0%)
- 급여관리 517,244,634천원(64.6%)
- 교육행정비 21,459,296천원(2.7%)
- 교육사업비 7,700,609천원(1.0%)
- 학 교 비 81,263,916천원(10.2%)
- 사학지원비 47,745,806천원(6.0%)
- 시 설 비 123,311,475천원(15.4%)
- 제지출경비 593,306천원(0.1%)으로,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다음년도 이월액 43,212,316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673,680천원(1.6%)
- 교육사업비 239,200천원(0.5%)
- 학 교 비 600,000천원(1.4%)
- 사학지원비 7,950,063천원(18.4%)
- 시 설 비 33,749,373천원(78.1%)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불용액 65,970,71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36,265천원(0.1%)
- 급여관리 12,959,120천원(19.6%)
- 교육행정비 2,548,548천원(3.8%)
- 교육사업비 1,095,261천원(1.7%)
- 학 교 비 4,443,410천원(6.7%)

- 사학지원비 5,140,704천원(7.8%)
- 시설비 13,520,012천원(20.5%)
- 제지출경비 984,134천원(1.5%)
- 예비비 25,243,256천원(38.3%)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2%로 '97년도 5.6%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1.3%, 사학지원비는 4.4%, 제지출경비는 1.5%, 예비비는 16.8% 증가한 반면 급여 관리는 15.9%, 교육사업비는 0.3%, 학교비는 2.1%, 시설비는 5.7%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0	24,335,709	41	18,876,607	0	0	71	43,212,316	

'99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35,709천원, 사고이월 41건에 18,876,607천원, 총 71건에 43,312,31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2,248,926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출 액	지출결정일	비 고
손해배상금	145,460	145,460	'99. 2. 8	
손해배상금	39,451	39,450	'99. 7. 7	
손해배상금	121,385	121,385	'99.12.23	
손해배상금	5,991	5,991	'99.12.23	
계	312,287	312,286		

위 4건의 예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안전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과 제천중 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1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대지료	4,121	1,563	4,121	1,563	대부료 및 사용료 미납
대가료	4,989	9,616	4,989	9,616	대부료 미납
수업료	70,330	0	42,528	27,802	세입금 횡령
잡수입	2,532	8,203	2,532	8,203	손해배상 청구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240,000	102,000	150,000	192,000	재산매각대 미납
임대차전세금	351,000	0	109,000	242,000	원어민 전세
대여장학금	32,933,876	5,890,730	15,613,323	23,211,283	대여장학금
계	33,606,848	6,012,112	15,926,493	23,692,467	

채권은 '98년도말 33,606,848천원에서 '99년도중에 6,012,112천원이 발생하고 5,926,493천원이 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3,692,467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채 무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 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차입금	0	74,978,000	74,978,000	0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채무는 74,978,00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임.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98년도말 현재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555,814,044	154,841,432	38,772,344	1,671,883,132	
행정재산	1,533,525,680	143,147,588	30,377,820	1,646,295,448	
잡종재산	22,288,364	11,693,844	8,394,524	25,587,684	

공유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6,069,088천원이 증가된

1,671,883,132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으로 '99년도에 143,147,588천원이 증가되고 30,377,820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의 현재액은 1,646,295,448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64천원으로, '99년도에 11,693,844천원이 증가되고 8,394,52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5,587,684천원임.

○ 물 품

(단위 : 천원)

'98년도말 현재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9,839	49,914,499	2,309	14,633,317	680	3,023,180	11,468	61,524,636

물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1,468점에 61,524,636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9,839점 49,914,499천원에 비하여 '99년도에 2,309점 14,633,317천원이 증가되고, 680점 3,023,180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인잔액	비 고
907,310,167	799,583,989	107,726,178	○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07,726,178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7,310,167천원이고, 총 지출이 799,583,989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07,726,178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

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를 지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예산 확정시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1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르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출예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9)

(제11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6.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6월 12일(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폐지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 2000.2.28)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폐지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였던 사항이 동 시행령에 포함 되었고, 그 외 기타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6월 12일(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안 제7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
-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일부 완화(안 제14조)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안 제22조)
 - 현행 도유(교육)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

-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이자를 5퍼센트로 하향조정 함.
-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농공단지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안 제23조)
 - 도유(교육)재산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
 - 기존에 벤처기업전용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특례로 적용하던 도유(교육)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1000분의 10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까지 확대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정함.
-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안 제23조의2)
 -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유(교육)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의 대부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 회 생략,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의 완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 조정, 폐교재산 등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과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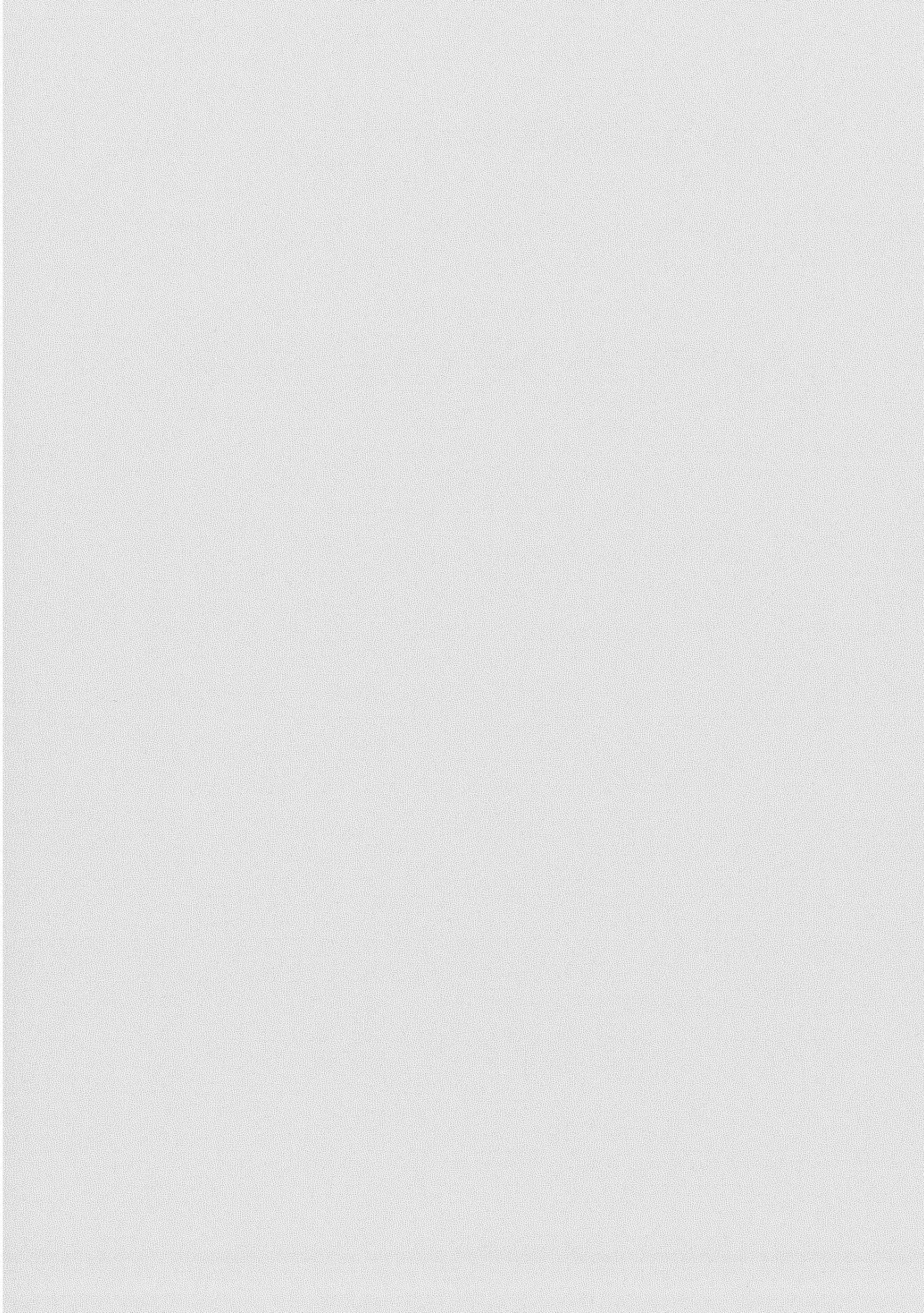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2000.6.12 ~ 6.1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 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7
- I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13
- IV. 부 록
 -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5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명서 17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11시 35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상일

이상일위원입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38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손만재위원님이요 이야기 되셨지요?

손만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손만재위원님이 감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손만재 위원님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모든 의안이 잘 처리되도록 적극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9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14일, 그리고 15일 3차에 걸쳐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모레 6월14일 14시에 조례안 2건에 대해 집행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충원, 송진하

0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 1)

條例 審查 小 委員 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4일 (수요일) 11시 27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개회)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폐지안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사실상의 뒷받침 없이 조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2월28일 개정 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법제심의위원

회, 16조에 법제심의위원회에 구성에 관해서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에 관한시행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제심의위원회는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으로 제안은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조례 폐지하고 규칙으로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손만재위원님?

● 손만재 위원

예, 질문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다음 송진하위원님?

●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다음 이기수위원님?

●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이상일

이충원위원님?

● 이충원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교육위원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중 세번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것을 개정을 해서 폐교재산 대부료는 1000분의 30이상 그렇게....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폐교활용 재산은.

● **김광수 위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내려간 거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예,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그거는 경작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때는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000분지 10

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재산관계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5%, 1000분지 50을 적용했었는데 폐교재산에 한해서는 시행령에 10%를 하한선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교재산 임대료를 10%로 할 것인가 그냥 현행대로 1%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5%로 할 것인가 이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다른 시·도에 추이도 살펴보고 하느라고 솔직히 이 조례안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도 아직 안 정한 데도 있고 일부 정한 데는 저희와 같은 수준인데 폐교재산에 한해서는 1000분지 30을 적용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안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먼저 보다 상향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하향 되는거지요. 1000분지 50을 폐교재산에도 적용을 했었는데 폐교재산에 한해서는사실상 이게 오지 벽지에 있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광수 위원**

임대를 할래도 안 되는거....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래서 임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낮추는 겁니다.

●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만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행정간소화 하향조정, 뭐 즉시 시대에 비추어 봐서 부득이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부분료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하지말고 조정을 융통성있게 하는게 어떨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재산이 아주 요지에 있는 것은 서로 할려고 하는거고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데는 사용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을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집행청에서 아주 요지에 있는 거는 더 받고 아주 동떨어진 거는 아주 헐하게 해서 하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래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지 30이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30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좋은 데는 지금 현행대로 1000분의 50도 받고 여건이 좋지 않는데는 1000분의 30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골자는 뭘니까. 취득처분 의무화된 재산은 그냥 심의하지 않고 하는거와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시킨거하고 제일 밑에 요율을 내린거 하고 세가지로 요약 하겠는데 첫번 두번째야 더 질의할 사항이 없겠지만 세번째 요율 문제는 이 건 법적으로 법적근거가 1000분의 50 1000분의 30 이렇게 된 것들이 어느 상위법에 근거가 있데서 이렇게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상위법에 그렇게 이상으로 하는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낮추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낮추는건 저 교육부에 대한 상위법 밑에 있는데 준칙으로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공문에 의해서 예?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
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
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충원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총무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명서 : (별첨 2)

條例 審查 小 委員 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5일 (목요일) 10시 04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

(제114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이걸 저 이의가 아니구요, 5월 31일자 현재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군데인데 지금 현재 임대된 것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모두 폐교된 것은 189개교인데 자체활용하는 곳이 8군데, 지금 유상허가해 준 것이 66군데, 무상은 없습니다. 매각한 것이 66, 현재 임대를 해주지 않고 보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개교가 됩니다.

● 김광수 위원

49개교 그럼 8개교는 자체적으로 사용하

고 있고?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 위원장 이상일

되셨습니까, 뭐 다른 말씀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거쳐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아울러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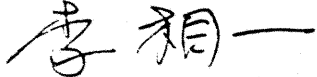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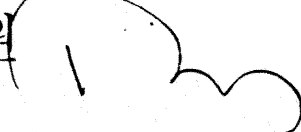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위원 김광수 

위원 송진하 

위원 이기수 

위원 이충원 

(별첨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6. 12 (월) 11:4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6. 14 (수) 14: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6. 15 (목) 10:00~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폐회	

(별첨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 명 서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 명 서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교육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시안 참고
- 일반지방자치단체조례와 형평유지

□ 추진상황

- 개정안작성 : 2000. 1월 ~ 3월
- 입법예고 : 2000. 3. 17 ~ 4. 6
 - 도보, 산하기관공문시행, 인터넷게재
- 충청북도교육청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2000. 4. 26

□ 주요개정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항 신설(안 제7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이자율 하향 조정(안 제22조)
 - 현행
 - 10년이내 기간 : 8%
 - 철거주민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토지를 매각하는때
 - 개정
 - 10년이내 기간 : 5%

- 철거주민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때

- 5년이내 기간 : 8% 대상범위 확대

-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 관광진흥법에의거 조성된 재산을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때
-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3.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조정(안 제23조)

○ 현행

-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25

○ 개정

-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사용시 대부료는 1000분의 10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25
단,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시 1000분의 10
- 폐교재산 대부료는 1000분의 30이상

4.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안 제23조의2)

-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단,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 제외

5.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5조)

- 경계가 불명확한 부지평가액은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

-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
-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정하고
-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신탁의 종류를 정함(안 제31조의2)

-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7. 공용전세주택 관리조항 신설(안 제55조의2)

-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

8. 행정간소화와 민원인편의제공 및 규제완화(제6조,제7조,제14조)

9.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 조례내용을 정비(제8조,제14조,제17조 제20조의2,제23조,제23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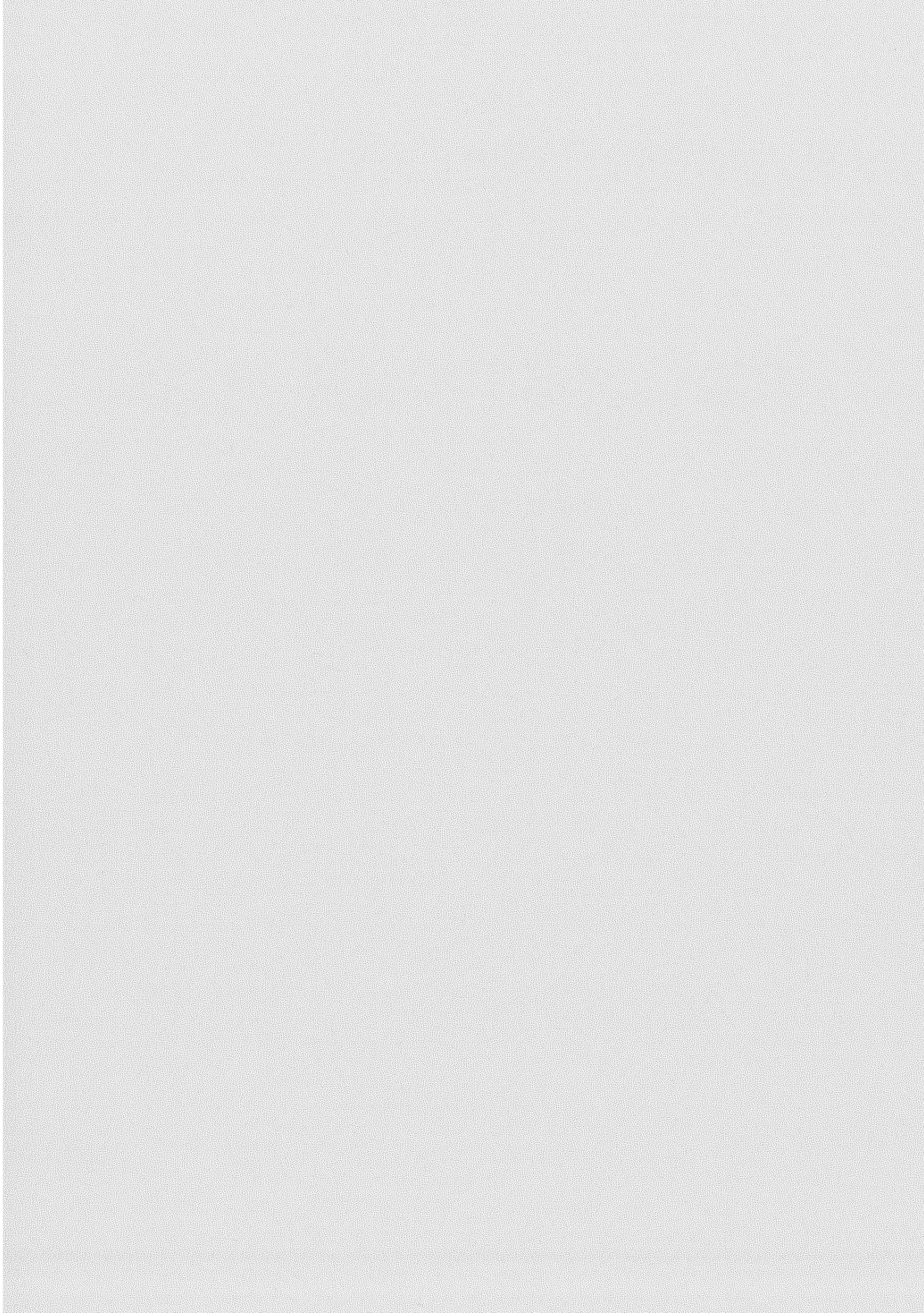
10. 용어정리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개선·보완(제18조,제20조의3, 제22조,제23조,23조의3,제25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36조, 제45조,제57조)

第1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2000.6.12 ~ 6.1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
- 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3
 -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25
 -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2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14시 12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12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 13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이기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기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기수

본 위원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행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4시 15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김광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함)

● 위원장 이기수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간사 김광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6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하여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결산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중 '9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9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본회의 별책 2 참조)

이상으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해 답변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교육위원입니다.

결산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입이나 세출현황을 이렇게 볼 적에 세입도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졌고 징수액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출보고 내용을 볼 적에는 여기 그대로 명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세출잉여금, 또 불용액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추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것이 지적이 되고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결산검사 받을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그 보조청에서 국가에서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 사고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계약은 해놓고 당해 연도내에 공사마무리가 안되서 다음연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명시이월은 무엇에다가 쓰기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거고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 채권사항에 10쪽을 보면은 대가료라

고 하는거 말이지요. 요것좀 설명해 주실까요? 498억8,800원.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대가로 말씀하신겁니까? 이거는 단양교육청에 연도내에 못받아 들인건데 금년 5월2일부로 961만5,690원을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어떻게 이자는 받게 되나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연체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연체이자까지 받았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받았답니다.

● 김광수 위원

받았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받았답니다. 이자를 받았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바로 수업료 밑에 진천상고 상용잡급 이미경 그 세입금 횡령사건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진천상고에 세입금 그 횡령사건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재판에 계류중입니다만은 채권확보는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세입조치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걸 변상을 못할 것 같으면 보증이 재정보증인이 있나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본인 재산이 그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건물하고 예금 재산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광수 위원

7,000만원이나 그렇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니 2,700.

● 김광수 위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기 때문에 2,700이요? 그 앞에....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다른 것 가지 다 합쳐서요.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채무에 있어서 749억7,800백만원이 이게 어디어디에 금융기관이지요. 여기 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년단축, 정년단축은 아닙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입을 한 겁니다. 이 액수가 작년에 이미 집행이 다 된 겁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 작년도에 다 나갔던가 조금 남았었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여기에다가 자체자원을 일부 포함해서 이미 지급이 된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이

된겁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하고 그 공유재산현황하고 물품현황 그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부가격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장부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 시세로 할 것 같으면 몇조원 되겠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보면은 1조6,000억정도 재산이 있는데 시가로 해서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 김광수 위원

물품현황도 그런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물품도 취득가격입니다.

● 김광수 위원

취득가격, 물품은 취득가격일 것 같으면 감가상각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이네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거는 처분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취득가격으로 처분도 하고 또 장부에 등재할 때도 취득가격으로 등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물품은 좀 쓸것 같으면 이게 중고가 되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감가를 해야 될텐데.... 장부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다른분 한 다음에 또 있다가

할까요, 먼져번에도 좀 그렇게 했지요?

● 위원장 이기수

다하고서....

● 김광수 위원

다하고서....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그 책에 13쪽을 볼 것 같으면 예금이자 수입이 81억 3,211만7,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기에 금을 한 이자가 이렇게 나온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거의 정기에금이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도성예금이라든지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적기에 그 단기간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종류는 조금 다양합니다.

● 김광수 위원

정기에금을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이 그렇게 있었던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사 같은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거는 예산은 전년도 말에 계상이 되고 교부금은 연초부터 옵니다만은 공사같은 것은 하반기에 대개 대금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에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여기에 들어가구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물론이지요. 예,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같은 것도 주요 그 재원이 됩니다.

● 김광수 위원

우리교육위원중에서 누구 한분이 결산 그 검사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좀 이 내용도 준비하게 알고 그럴텐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자고 하니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불용물품매각대라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5,667만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물품매각대 같은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장부에 다 나와 있을테지만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가서 변상금 위약금 불납결손내용 변상금하고 위약금에 관해서 특히 위약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같은거에 그 위약이 했을적에 나온 건가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교육청에 10개기관에 그 위약금이 1억 3,66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고, 실고 모두 합쳐가지고 각종 그 공사계약을 한다던지 물품구매 계약을 했을 때 기한내에 납품이 안됐거나 준공이 안됐을 때 소정의 그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액수는 많든 안하네요 그거, 2억1,809만원 많든 안하네요 그거 공사액수로 봐서는 많이 봐준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봐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 김광수 위원

이거 봐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마로 밑에 불납결손액은 청주농고 대지로 불납결손인데 이거 완전히 결손처리가 된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불납결손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못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던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98년도에 청주농고 임대사용료로 사용자 이미자였었는데 이걸 독신자입니다. 가정이 어려워 이 세입자의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저당 잡힌 채 내덕동 유교회관에서 사글세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만 사글세 방에 보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 김광수 위원

액수는 뭐 많은 안하지만 예, 그 다음에 18쪽에 가서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게 나오는데요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10% 절감한 것이 주축이 되는 거지요? 쓰다가 다 못쓰고 남은 돈 하고?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목적대로 다 집행하고 예산잔액 남은 것도 있고 또 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도 있고 설계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그 이루어진 것이 불용액으로 659억7,070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볼 적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릴것이 뭐냐 하면은 공사 입찰을 보고서 남은 차액 예산액이 1억인데 입찰 보이고 보니까 8,000만원에 떨어졌다 나머지 2,000만원이 그것을 모집해 가지고서 연말에 다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고이월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은 그때 그 학교에다가 준다던가 또는 그 당해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서 바로 바로 나누어야지요 집행하게 할 것 같은면은 그러한 잔액 남는 것이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전부 그것을 균거라던가 도의 전체적으로 그것을 합쳐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어진 예산이 그때 못써가지고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하는데 그때 그때 주어진 것을 그 당해 군이나 당해 학교에다가 바로 다른사업으로 집행을 하게끔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일부는 집행 잔액을 그 사용승인 신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서 신청이 오면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추경하고 7월달에 2차 추경하고 그리고 3차 추경을 작년 12월 24일날 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고 잔액은 그걸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다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 김광수 위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또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조금에 몇한데 정실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교육과학연구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연구원은 완공 되기까지 순한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그 애로를 겪으면서 이렇게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 보면은 불용액이 40억5,1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내부시설비를 전부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하나 내용을 설명 해 드릴까요?

● 김광수 위원

그걸 하나 하나 다 해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 김광수 위원

아니 물론 과학연구원에 예산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게 전시설 내부시설 설치비 주로 거기에서 많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 김광수 위원

물론 그 감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따져 보셨을 테이지만 저희들이 이거 지금 현재 검토 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방법이 있어야죠.

예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광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손만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한 저도 책임의 일부를 통감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1,077억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액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월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긴 이유 다시 말해서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월액이 그 예산에 비해서 과다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편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한 것이 432억입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도 비교적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명시이월같은 것은 교부금이 연말에 가서 교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3회 추경에 12월 24일 그 작년 12월 24일 추경에 들어간 것이 전부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문제는 교부금이 연초에 다 1년치가 다 와 버리면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경상비의 10%를 절감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던 거고 또 예비비가 250억이 작년에 넘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7.2%나 되는 659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교육행정비에서 10.3%, 교육사업비에서 12.1% 제지출경비는 무려 62.3%나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에 불합리성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만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명예 퇴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를 임용을 하니까 인건비 차액이 129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둬 말씀입니다만은 10% 예산 절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9억8,000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35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예비비가 252억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0건에 234억3,000여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188억7,000여만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물함 구입이나 이 급식실을 이렇게 건축을 해 주는데도 조립식으로 많이 지은 걸 봤는데 이런 조립식 시설이나 화장실 공사나 진입로 포장 또 철거공사 이런 따위가 명시이월이 되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월 할 필요가 없을텐데 그 이유가 뭐니까? 그 포장 공사하고 잠깐 진입로 포장 공사하는데 명시이월을 할 택이 없는데이거 그 담당자가 사업을 자꾸 지연 시킨거 아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거를 익년도에 걸쳐서 당해연도내에....

● 손만재 위원

그건 아는데....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주로 명시이월이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은 작년 12월 24일자로 3차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이 모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여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 손만재 위원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잔액이 165억6,000여만원 그 불용액이 무려 17%를 웃돕니다. 지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예산절감 뭐 이런 것 등등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교부금 교부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도 중간이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넘어서 교부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구노력비라고 해서 84억정도도 연도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또 47억이 작년 연도말에 교부가 된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다섯번째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시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시설사업시행에 있어서 6개월이상 발주를 하지 못한 건수가 9건이나 됩니다. 6개월이상 발주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늦게 나와서 그런거는 아니겠지요 이거?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이중에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시설 같은거 아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본 공사가 거의 완공상태가 되어야만 거기다 무슨 물건을 어떻게 늘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득이 합니다. 또 이중에 진천중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목적실로 6억8,000만원을 특별 교부를 받았는데 진천 지역에서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다시 교육부에 교부 요청을 하고 추가교부 6억을 다시 교부를 받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근 당초 6억8,000 온 후부터 따지면 1년 정도를 계약이 늦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추가교부 나온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보면은 약3개월정도 늦게 발주가 된 겁니다. 처음에 6억8,000 교부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1년정도 늦게 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천 청암학교 이전 신축은 설계 및 입찰기간하고 공사기간 과다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담당자가 신경을 썼더라면 다만 한 두달이라도 기한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요건 7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담당자가 조금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은 잘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제가 물품정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준보다 훨씬 많은 물품을 구입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모사전송기나 카메라,냉장고 그런 것들은 구입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산은 있고 하니까 마구 사들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 각급학교에는 기자재가 시설기준령에 60% 조금 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은 심지어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기준정수에 2배 이상을 산 물품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선 이렇게 실험실습기자재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거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답변을 듣기 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책정을 4년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하루가 다르게 꼭 바뀌야 될 그

런 물건도 있고 한데 정수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는 저희가 3-4년전부터 학교통·폐합을 폐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폐교에 따른 남는 물품 아까 말씀하신 모사전송기 같은 거는 사실은 학교에 여러대도 필요하게 아닙니다. 한 두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교로 인한 불용물품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 정수책정을 해마다는 못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정수 책정부터 다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뭐 어느 기관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수가 5개인데 12개를 갖다가 사다 놓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월9일자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교 예정 연도가 아직 4,5년 남아 있는데 화장실이 조금 수리할 때가 있는데 폐교될 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전혀 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하는 보도가 나온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농촌을 다니다 보면 소인수학교 특히 오지나 농촌의 학교에는 예산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챙겨 주셔 가지고 학생이 있는 한은 그래도 그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는게 원칙이 아니냐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만은 학생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예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거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진하 위원

송진하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9,000여억원이나 되어서 많은 예산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는 넉넉치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청에서는 예산지침을 잘 준수를 해서 교단 중심의 예산집행을 하셨고 또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한 알뜰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7억4,000만원중 도서관운영비로는 1억3,700만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타 시·도에 비하여 볼 때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에 도서관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더 많은 예산을 전입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99년도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게 되어 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의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한푼도 전입

금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도서관운영비 지원은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이 받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개 시·군당 1,000여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절반이라든지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시·군도 자체에서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해서 선뜻 응해줄 것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역교육장님과 도교육청에서 계속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 작년도에 저희가 결식학생중식지원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20억8,9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은 일단 점심을 못먹는 학생 급식해결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6,958명인데 아마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는 1,200원 중·고등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2,000원 비급식 학교는 2,500원 해서 연간 220일을 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여름, 겨울방학중에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주식과 부식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건 결식아동 관계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학교급식시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도록 뭐여 냉방시설이라든가, 온방시설 이런 것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학지원금이 '99년도에는 47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그 지원금은 증가되고 있는데 사학법인 전입금 전입금은 '98년도와 '99년도 비교해서 얼마가 증액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법인전입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수익재산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전입금 그 얼마나 증액되었나 하는 문제는 자료를 좀 챙겨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뽑아봐주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다음에 해주시고 현재 그 고수익재산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계시나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거는 저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과거 십수년 전부터 고수익재산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학교법인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토지, 토지중에서도 임야 등 수입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계속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진천상고 세입금 횡령사고에 있어서 7,000여만원중에 아직 미보전액이 2,780만원이 있는데 이견 어떻게 되는건가, 안할건가, 할건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데 당시에 출납원 재산을 가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분명히 채권확보가 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네번째로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학교시설사업은 그 정해진 기일내에 완공이 되어야만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시설사업에서 9건 125만8,000만원은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6개월이상 지연 발주해서 발생한 사고이월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98년도에도 이와 같이 지연발주로 10건 65억9,0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사무절차상 발주가 늦었다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던가 한다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6개월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교육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하기 위한 소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보통 10억짜리 공사다 할 것 같으면 설계기간을 아마 90일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가 되었다라고 이걸 또 검토하고 입찰에 붙이는 기간, 공사기간 합치면 한 7,8억정도만 되어도 공사기간이 180일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번번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더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단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7개월 8개월 대충 예산성립후 7개월 8개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이 연도말에 가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실무자들이 연도말에 대번 설계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안들어가고 겨울을 지나고 할 공시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서 손해배상금을 3억1,200만원을 지출했

는데 이중에 진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학생사고기 때문에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이 것이 아니냐 하는걸 질의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청주기계공고 학생 합의배상금이 2억 7,283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요거는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을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중학교 건은 학교안전공제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걸 다 짚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약 7.9%로 남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소규모학교 거기는 몇 년후에 폐교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소재지인데 시범학교라고 하는데는 호텔처럼 잘 짓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설과 나쁜 시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면소재지인데 어떤 데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

어서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나는데 아이 어떤 학교는 냉난방 해서 호텔처럼 짓는데 이거는 투자상의 또 평등의 원칙에서 제고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소규모학교도 문제지만 도시지역에 과밀학교가 문제입니다. 충주에 중앙초등학교 같은덴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을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 135억이나 되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걸로 과밀학교 해소방안은 세워주실 수 없는건지 다른건 좀 덜 쓰더라도 학교 세워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공부도 되는 거지 운동장도 5,000평도 안됩니다. 거기 학생수가 몇천명이 바글바글 하니 이거 수업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수는 없는건지? 또 한가지는 지금 사립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래는 유지재단에서 돈을 많이 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지재단에서 돈을 낼 형편이 못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가는 애들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지금 사립학교에 시설이 공립학교보다 월등이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약 57억4,1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어요. 시설규모가 아주 열악한 학교는 좀 골라서 공·사립 구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2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시설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줄수 있는 생각은 없는건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원들 명퇴수당 때문에 7백몇십억 빛이 있지요 그거 해소 방안은 뭐 세워놓고 있으신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시범학교는 정말 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학교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거의 다지요. 그런데 소규모학교에 수세식변소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습시다만은 머지 않아 폐교될 학교에 막대한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정말 내키지 않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범학교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억 60억씩 들여 하던거를 금년부터는 한학교 짓던거를 2학교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라도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게 있다고 하면은 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지장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과밀학교 해소문제 충주에 중앙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 칠금초등학교를 새로 지으면 과밀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걸로 진행이 된 걸로 봅니다.

● 이상일 위원

칠금초등학교에 지금 개교해서 학생이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칠금동에 개발지역에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개발지역에, 그리고 사립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2억씩이나 발생을 했는데 열악한 학교에 해주면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추천해서 가는 것인데 시설은 적어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5억 시설비 남은거나 사학에서 51억남은거 이거는 먼저번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시설비등에 전부 반영이 된겁니다. 차후라도 이런 재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학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립수준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퇴수당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작년에 빛진 것 말씀이지요. 차입한 것,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고가 떨어질 때 까지 저희는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추천해서 가는 것인데 시설은 적어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5억 시설비 남은거나 사학에서 51억남은거 이거는 먼저번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시설비등에 전부 반영이 된겁니다. 차후라도 이런 재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학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립수준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퇴수당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작년에 빛진 것 말씀이지요. 차입한 것,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고가 떨어질 때 까지 저희는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짚어주셨습니다. 별다르게 의문나는 것은 없고 아까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고이월금이 많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무려 180억정도 되거든요. 예산 배정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12월이 되어가지고서 3차추경까지 하도록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

라 교육부 자체에 예산 또는 자금배정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두가지 여쭙 보리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있잖아요 부담수입, 처음에 예상한 것 보다는 대개 1,874억, 제가 잘못 쓰였나 모르겠네요, 보다는 17억7,000만원이 약 9%정도가 감하게 수입이 되었는데 다른 분야 말고 교육비특별회계수입 두꺼운 책 45에서 46페이지, 대개 학교매각이나 이런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거는 저희가 도청에서 전입 받고 있는 건데 지방세 수입에 2.6%를 금년까지 받고 내년부터는 1% 올려서 3.6%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금년엔 예산보다 덜 온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세수실적에 따라서 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덜 왔다 하면은 추가로 저희한테 전입 시켜 줍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로 보게 된다면 처음 생각한 것 보다 덜 온거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9%정도 더 온거예요

● 이충원 위원

요거는 초과 수입된 것 약 9%로 정도 그러니까 세수가 도에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온거다. 다음에 두번째는 특수학교 이전 같은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법으로 얼마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천 청암학교 제가 두번을 가 봤는데 산 날팡이에 있었거든요 그거 옮기는 거지요? 그것이 이전신축비가 9억대 정도였는데 그렇지요, 작년에 그거 못 썼어요, 9억원 배정된 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건축비까지 전부 합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건축비입니다.

● 이충원 위원

건축비 말입니까, 전액 다 대주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건축비가 7억7,800인데요 사고이월된게.

●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그렇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그러고 1억7,000 이미 집행됐어요. 처음에 9억이 건축비만 그런데 그게 건축을 완료하는데까지 들어간건가 아닌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다 완료한대까지. 그럼 토지는 자기네가 마련한거고.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보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원에서 미리 마련하고 있는....

● 이충원 위원

그렇니까 지금 도 실정에 의해서 특수학교는 재량이구먼요, 사실은 특수학교 같은데는 국가에서 못하니까 전액 다 보조해 주어야 하지 않으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쭙어 본겁니다. 불쌍한 애들인데... 세번째는 과학교육연구원 신축 그때 해서 테이프 끊은 것이 8월이지요, 9월인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작년 10월경이지요

● 이충원 위원

10월에 했나 그렇니까 작년 12월 10일이라고 그러셨죠 결산한 것이....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12월 24일 아마 추경예산안은 먼저 냈겠지요.

● 이충원 위원

그때에 그러니까 물품이 다 시설이 다 안 되었는데 임시 테이프를 끊은 거구먼요, 그렇니까 완전히 개원하지 않은데 그냥 임시로?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본 공사는 다 되었는데 내부시설 일부가 좀 덜 된게 있었어요.

● 이충원 위원

왜 그런가하면 선생님들간에 시중에 각 학교에 있는 물품을 옮겨 놨다는지 반입을 하는지 물건을 트럭에 서울로 싣고 가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쭙보

는겁니다. 그 지금 다 들어왔어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다들어 왔다고 그러합니다.

● 이충원 위원

다 들어왔으면 됐지요. 9페이지, 이것 좀 이거는 제가 일종의 주문사항인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경초등학교인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옆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가경이지요. 세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보편은 전혀 옥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고 3학교가 다 강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책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예산을 봤으니 생각이 나는데 이 세학교는 아마 중간에 어디다 하나만 지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그건 주문입니다. 했으면 하는 원이 뭐 예산이 너무.... 지금 충청북도에 개축해서 쓸 교실이 지금 새로 짓는 것 말고 그러니까 헐어서 좀 위험도가 있다거나 앞으로 좀 개수해야될 이런교실이 어느정도 있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자료가 없다는데 요걸 챙겨가지고서....

● 이충원 위원

아니 챙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보편은 충북에 교실을 개수해야 할 것이 256인가 뭐 교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옥 보니까 교실개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른 보니까 특별히 교실 개수하는데 들어간게 어느건가 해서 잘 못 찾아서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마 결산서니까 그게 안 나왔을 겁니다.

● 이충원 위원

유념을 좀 하셔야 되질 않나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교실이 256인가 얼른 기억이 잘 안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거의 여쭙 보았기 때문에 전 몇가지 생각난 주문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거 의다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요 불용액 7.2% 하고 이월액 4.8% 약 12% 가 됩니다. 예산집행률이 88%인데 매년 그 게 어떻습니까 지난 금년 특히 더 많은 거 지요 불용액이 예산집행액이 떨어지는 거지 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인건비 불용액 이 많았고 예비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당초에는 59억인가 했었는데 2,3차 추경을 하면서는 예비비를 조금 깎아 썼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2월달에 추 경을 할 때 대폭 예비비가 220억정도 늘었 거든요. 예비비 늘은 것이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 온 교부금을 갖다가 연말에 왔기 때문 에 어디다가 사업도 확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다 넣어서 넣고 보니까 이 월이 된거지요. 예비비가 많았다는거 그리고 인건비 명퇴로 인한 고호봉과 저호봉 차 이에서 오는 인건비 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보통 작년을 제외하고는 90몇프로 쪼뚝이지요. 예산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정도?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년보다 오히려 줄은 수준이랍니다.

● 위원장 이기수

아 줄었어요.

● 김광수 위원

'98년인가 언젠가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 해서 그것을 더 많이 보유를 했던 때가 있 었거든요.

● 위원장 이기수

그 교육청 불용액 거기 보면은 말입니다. 본청이 4.0%, 청주가 3.2%, 제천이 5.4%, 충 주가 5.1% 그렇게 되어 있고 농촌 학생들이 있는 보은이나 영동이나 보은 12%, 영동 13.5%, 청원11.6, 진천11.7 이와 같이 대도 시나 본청에는 불용액이 적은 것에 비해서 이 지방교육청은 불용액이 10%이상 이렇게 된건 다 투자를 안한 것 아닙니까? 교육시 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도시보다 는 열악한 편인데 이 집행률도 이와 같이 불용액 퍼센트도 높은 것은 그거 왜 그런가

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 예산 규모 대소에 따라서 비율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농촌지역이 미 집행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잘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제가 보기는 도시쪽이 아마 교육환경이 더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쪽이 좀 높고 농촌지역쪽에는 좀 예산액을 거의다 집행을 해 가지고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텐데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가지고서 금년 예산은 농촌지역의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과거에 얼마전에 준비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러므로서 중복투자가 되어 가지고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와 아울러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열린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2대 교육위원들도 열린 교육하는 형으로 진 학교를 방문하고 해 보면 전부 칸막이를 뜯고 화장실도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래서 산만할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걸 소란하니까 이걸 또 막는 작업을 또 하는 데가 더러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시 개조하는데 열린교육 공간을 다시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며 그 학교는 대개 몇군데나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7차 교육과정 그 시행을 앞두고 중복투자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먼저 해 놓은데다가 이걸 함으로써 이동식 수업이니 수준....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오히려 상당한 물량의 교실을 더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7차교육과정 시행이 되었고 중학교는 내년부터인데 중학교도 또 초등학교도 오히려 시설을 더 확장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6-7학급 되면은 11개 정도의 교실을 지금 더 지어져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열린교육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 것을 지금 막아주는데, 헐은 것을 막아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 위원장 이기수

아니 지금까지 한게 실적이....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일부러 헐었다가 막는 것이 있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헐지는 않고 애초에 시설을 할 때 터놓았던 것을 가변성있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제114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있게끔 그런 칸막이를 설치 한데가 미원초등학교 하고 충주에 용산초등학교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 2학교만 막는 거예요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큰 학교는 거기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거 한번쯤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에 따라서 너무 수업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렇게 때문에 열린교육 상태로 이렇게 공간 털어 놓고 해 가지고서 수업효과를 저하시킨다던지 이렇게 때문에 다시 좀 칸막이를 한다던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며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청취하시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교실을 신축했을 경우는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서 다시 재정적인 낭비가 없게끔 그런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본 결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 1)
- ▶ '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 별책부록 2 참조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본회의 별책부록 3 참조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11시 08분

議事日程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08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우선 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소위원회에서 '99년도 결산 전반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이기수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의안담당 연승흠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 (별첨 2)

(끝에 실음)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초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에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청 관계관공무원에게도 본 결산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기까지 성심껏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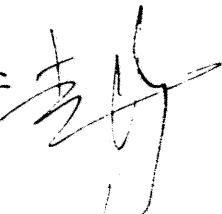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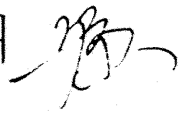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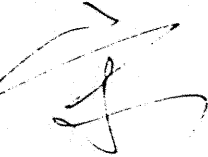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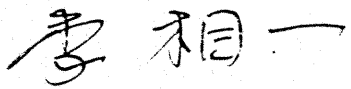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 (별첨 2)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6. .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손만재 
위원	송진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별첨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6. 12 (월) 14: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 산승인의건	
2000. 6. 13 (화)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 산승인의건 ※폐회	

(별첨2)

(제114회 임시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안)

2000. 6.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29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29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 의견	29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29
5. 토론 주요내용	29
6. 심사보고 주요내용	30
7. 심사결과	35
8. 소수의견 주요내용	35
9. 기타 필요한 사항	3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6월 12일 제114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2000년 6월 12일)
 - 제2차 소위원회(2000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9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 세출결산액은 799,583,989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43,212,31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11,621천원, 국고보조금잔액은 2,240천원으로써 총 107,726,17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843,305,773	908,767,015	907,310,167	799,583,989	107,726,178

-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8,767,015천원('98.이월사업비 65,461,242천원 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799,583,9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07,726,1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3,212,316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64,513,862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64,513,862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24,335,709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8,876,607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08,767,015	907,379,402	907,310,167	22,052	47,183	99.8%	99.9%

- '99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907,379,40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7,310,167천원이 수납되고 22,052천원의 불납결손과 47,183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52,645,483천원(71.9%)
 - 자체수입 254,664,684천원(28.1%)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10.2% 높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843,305,773	65,461,242	908,767,015	799,583,989	43,212,316	65,970,710	88.0%	7.2%

'99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83,9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3,212,31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65,970,71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인데,

○ 지출액 799,583,989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264,947천원(0.0%)
- 급여관리 517,244,634천원(64.6%)
- 교육행정비 21,459,296천원(2.7%)
- 교육사업비 7,700,609천원(1.0%)
- 학 교 비 81,263,916천원(10.2%)
- 사학지원비 47,745,806천원(6.0%)
- 시 설 비 123,311,475천원(15.4%)
- 제지출경비 593,306천원(0.1%)으로,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다음년도 이월액 43,212,316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673,680천원(1.6%)
- 교육사업비 239,200천원(0.5%)
- 학 교 비 600,000천원(1.4%)
- 사학지원비 7,950,063천원(18.4%)
- 시 설 비 33,749,373천원(78.1%)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65,970,71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36,265천원(0.1%)
- 급여관리 12,959,120천원(19.6%)
- 교육행정비 2,548,548천원(3.8%)
- 교육사업비 1,095,261천원(1.7%)
- 학 교 비 4,443,410천원(6.7%)
- 사학지원비 5,140,704천원(7.8%)

- 시설비 13,520,012천원(20.5%)
- 제지출경비 984,134천원(1.5%)
- 예비비 25,243,256천원(38.3%)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2%로 '97년도 5.6%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1.3%, 사학지원비는 4.4%, 제지출경비는 1.5%, 예비비는 16.8% 증가한 반면 급여 관리는 15.9%, 교육사업비는 0.3%, 학교비는 2.1%, 시설비는 5.7%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0	24,335,709	41	18,876,607	0	0	71	43,212,316	

'99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35,709천원, 사고이월 41건에 18,876,607천원, 총 71건에 43,312,31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2,248,926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 출 액	지출결정일	비 고
손해배상금	145,460	145,460	'99. 2. 8	
손해배상금	39,451	39,450	'99. 7. 7	
손해배상금	121,385	121,385	'99.12.23	
손해배상금	5,991	5,991	'99.12.23	
계	312,287	312,286		

위 4건의 예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안전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과 재천중 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14회 임시회에 안전으로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대지료	4,121	1,563	4,121	1,563	대부료 및 사용료 미납
대가료	4,989	9,616	4,989	9,616	대부료 미납
수업료	70,330	0	42,528	27,802	세입금 횡령
잡수입	2,532	8,203	2,532	8,203	손해배상 청구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240,000	102,000	150,000	192,000	재산매각대 미납
임대차전세금	351,000	0	109,000	242,000	원어민 전세
대여장학금	32,933,876	5,890,730	15,613,323	23,211,283	대여장학금
계	33,606,848	6,012,112	15,926,493	23,692,467	

채권은 '98년도말 33,606,848천원에서 '99년도중에 6,012,112천원이 발생하고 5,926,493천원이 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3,692,467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채 무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차입금	0	74,978,000	74,978,000	0	교원 명퇴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채무는 74,978,00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임.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98년도말 현재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555,814,044	154,841,432	38,772,344	1,671,883,132	
행정재산	1,533,525,680	143,147,588	30,377,820	1,646,295,448	
잡종재산	22,288,364	11,693,844	8,394,524	25,587,684	

공유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6,069,088천원이 증가된

1,671,883,132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으로 '99년도에 143,147,588천원이 증가되고 30,377,820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의 현재액은 1,646,295,448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64천원으로, '99년도에 11,693,844천원이 증가되고 8,394,52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5,587,684천원임.

○ 물 품

(단위 : 천원)

'98년도말 현재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9,839	49,914,499	2,309	14,633,317	680	3,023,180	11,468	61,524,636

물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1,468점에 61,524,636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9,839점 49,914,499천원에 비하여 '99년도에 2,309점 14,633,317천원이 증가되고, 680점 3,023,180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인잔액	비 고
907,310,167	799,583,989	107,726,178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07,726,178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7,310,167천원이고, 총 지출이 799,583,989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07,726,178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를 지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예산 확정시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1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르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출예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